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6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8. 2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안전행정부가 경제5단체, 중소기업음부즈만 등과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을 개선하고,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현실과 맞지 않는 특수가압시설, 흡수정 관련 조항 삭제(안 제2조제3호·제4호, 제6조제2항, 제15조, 제42조제1항제5호)

나. 급수설비 폐전 사유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 삭제함(안 제25조제3항제1호·제2호)

○ 상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

○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

다.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및 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신설함(안 제46조, 제46조의2, 제46조의3, 제46조의4)

○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.

○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수도법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,

○ 「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안」(환경부)

○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일괄정비권고(경상남도 법무담당관-124호
(2014.01.07.)) 유형2-과제 6, 과제 7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규제개혁추진단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완화 및 개선함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6. 24. ~ 7. 14.

(나) 예고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15조, 제4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.

제46조 제목 “(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)”을 “(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”을 “원인자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2, 제46조의3,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·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46조의3(원인자부담금의 정산)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6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4(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처리)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.

별표 6 제목 “원인자 및 손피자부담금 산출기준(제46조 관련)”을 “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(제46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"흡수정 이하의 장치"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,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.</p> <p>4. "특수가압시설"이란 수역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.</p> <p>5. ~ 11. (생 략)</p> <p>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 (생 략)</p> <p>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,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5조(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)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,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,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25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.</p> <p>1. 상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</p> <p>2.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</p> <p>3.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 신청이 없을 경우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5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제25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1.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</p> <p>5.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 ④ ~ ⑤ (생략)</p> <p>제42조(정수처분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(이하 "정수처분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</p> <p>5.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한 자 6. ~ 12. (생략) ② ~ ③ (생략)</p> <p>제46조(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) 「수도법」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.</p> <p><신 설></p>	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정수처분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6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) ----- ----- -----</p> <p>원인자부담금 ----- -----</p> <p>제46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·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.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46조의3(원인자부담금의 정산)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6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 <p>[별표 6]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(제46조 관련)</p>	<p>제46조의4(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처리)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[별표 6]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(제46조 관련)</p>